

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3조 제1항 제3호 중

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음에 “차량등록사업소”를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○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

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3호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음에 “차량
등록사업소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3. 환경보호과, 생활위생과, 투자 통상과, 경제진흥과, 노동복지과, 교통행정과, 건설과, 도시과, 상하 수도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지적과, (훈)민원봉사과, (훈)농정과, (훈) 유통축산과, (훈)산림과, 농업기술 센터, 공원관리소, 수도사업소,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<u>조산설치</u> 읍·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4. (생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산업건설위원회 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차량등록사업소</u> ; ----- 4. (현행과 같음)